

# 태국 · 호주, FTA 체결과 주요내용

태국과 호주는 지난 7월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2005년 1월부터 협정 발효를 위해 준비중에 있다. 양국은 케언즈 그룹 회원국으로서 농산물 수출대국이다. 태국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이어서 농산물 수출대국인 호주와도 2003년 10월 FTA를 체결을 합의하였다. 케언즈 그룹으로서 농산물 수출강국인 태국도 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 20년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는 등 FTA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양국의 FTA(이하 TAFTA라 한다)의 평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1. TAFTA의 위상과 평가

TAFTA는 2003년 10월 19일 정부간 합의가 이루어져 2004년 7월 5일 체결하였다. 호주에게는 싱가포르와 미국에 이은 3번째 FTA이다. 호주는 태국이 아세안 국가들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와 높은 경제성장률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 입장에서는 금년 2월 체결한 미국과의 FTA 협상이 ‘규칙 · 규제 · 기준에 관한 협상’이었던 점에 비교하면, 태국과의 협상은 관세가 중심이었다. 태국 시장의 ‘높은 관세장벽을 무너뜨리는 작업이었다’는 것이 호주 정부의 솔직한 평가이다.

양국 관세구조를 비교하면, 호주의 관세는 평균 4%로 낮고, 태국은 16%

로 높은 편이다. 그 중에서도 호주의 농산물 관세는 이미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TAFTA가 체결되었어도 호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호주 정부의 전망이다.

태국 입장에서 본 이번 협정은 탁신 총리가 9명의 관계 각료를 대동하고 7월 5일 체결에 참가한 것에서 잘 드러나듯이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 태국에게는 물품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기타 무역관련 분야를 널리 대상으로 삼은 가장 포괄적 협정이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03년도 양국의 무역규모는 37억 달러였는데, 2005년 1월부터 즉시 관세 대폭 감축 또는 철폐를 실시하기 때문에, 자동차, 가공식품, 의류, 신발 등의 수출신장이 기대된다고 의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단, 탁신 총리는 조인식 날의 만찬회 인사에서 상호인증 약속과 함께 위생·식물검역조치 및 식품규격에 대한 전문가그룹 설치를 제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주의 강력한 규제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추측된다<sup>1)</sup>.

## 2. TAFTA의 개요

협정 전반에 걸친 개요를 양측 모두의 입장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TAFTA는 관세철폐 및 인하를 중심으로 전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 (2) 2005년 1월 1일에는 관세품목수의 49%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 (3) 2010년부터는 양국간 관세품목수의 98%가 관세 철폐되어 완전자유화가 이루어지고, 현행 무역액의 95%에 상당하는 양이 자유무역으로 거래

---

1) 협정 제6장에서는 ‘위생식물검역조치 및 식품규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각 당사국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보호의 수준을 결정할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되게 되었다.

이를 양국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호주의 양허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호주는 협정발효시점(2005. 1)에서 태국 물품 3,080의 관세품목(현행 수입액의 36% 상당)에 대한 현행 제로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

(2) 그리고 협정발효 시점에서 태국 물품 2,003개 관세품목(현행 수입액의 47%에 상당)의 관세를 철폐한다.

(3) 또한 태국 물품 798개 관세품목(현행 수입액의 13% 상당)의 관세를 2010년까지 철폐한다.

(4) 의류·최종섬유제품에 대해 239개 관세품목(현행 수입액의 4%에 상당)은 현행 25%의 세율 그대로 유지하지만,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호주는 의류·최종섬유제품의 일부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를 당분간 유지하고, 최종적으로 폐지하기까지는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농림수산물과 관련된 것으로는 참다랑어 캔에 대해 현행 5% 관세를 즉시 2.5%로 인하하고, 관세 폐지는 2007년까지 유예기로 한 것이 예외이다.

이에 대한 태국측 양허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태국은 협정발효시점(2005년 1월)에서 2,934개 관세품목(전품목수의 53% 상당, 현행 대호주 수입액의 78% 상당)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이중 현행 관세 제로는 206개 품목이다.

(2) 그리고 전품목수의 41%를 2010년까지 폐지한다. 이는 현행 수입액의 17%에 상당한다.

(3) 관세 의무수입물량까지 포함해 남은 모든 관세를 2015년 내지는 2020년까지 철폐한다. 단 일부 유제품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경과기간을 확보했다.

### 3. 태국의 농산물 양허

태국이 양허한 비농산물을 살펴보면, 일부에 관세철폐기한을 2015년까지로 설정한 것이 있고, 비농산물이므로 당연히 의무수입물량은 없다. 농산물의 양허에 대해 살펴보자.

#### 3.1. 식육

- (1) 양고기는 현행 32%의 관세를 2010년까지 철폐한다.
- (2) 소고기는 현행 51%를 즉시 40%로, 자투리 고기는 현행 33%를 즉시 30%로 내리고, 모두 15년 후인 2020년까지 철폐한다.
- (3) 돼지고기는 현행 33%의 관세를 15년 후인 2020년까지 철폐한다.

#### 3.2. 유제품

- (1) 육아용 유제품(현행 5%), 유당(현행 최대 20%), 카제인 및 알부민(현행 10%)의 관세를 즉시 폐지하고, 유지, 유식품, 요구르트, 스프레드, 아이스크림의 관세율을 2010년까지 철폐한다.
- (2) 탈지분유는 2,200 톤, 생유 및 크림은 120톤을 호주에게 의무수입물량으로 할당하고, 1주기 5년마다 17%씩 수입폭을 확대하며, 20년 후인 2025년에는 모든 관세와 의무수입물량을 철폐한다.
- (3) 버터, 치즈, 기타 분유와 농축유에 대해 15년 후인 2020년까지 관세를 철폐한다.

#### 3.3. 곡물 및 관련제품

- (1) 소맥(종가세환산 12~20%), 대맥·라이맥(호밀)·연맥(귀리)(종가세환산 최대 25%) 및 쌀의 관세와 의무수입물량을 즉시 철폐한다.
- (2) 볶지 않은 맥아(종가세환산 28%), 소맥 글루텐(31%)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소맥분(32.6%) 및 전분(31%)의 관세를 2010년까지 철폐한다.

### 3.4. 채소 · 과일

(1) 대부분의 신선과실 · 야채는 현행 33% 내지 42%의 관세를 2010년까지 철폐한다. 만다린 · 오렌지(현행 42%), 포도(현행 33%)는 즉시 30%로 인하하고, 10년 후인 2015년까지 철폐한다.

(2) 대부분의 열대과일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3) 신선 감자는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확대하고, 15년 후인 2020년에 관세 및 의무수입물량 모두 철폐한다. 감자 가공품은 현행관세 30%를 2010년까지 철폐한다.

(4) 과즙 · 과실캔의 현행 관세 30%를 즉시 24%로 인하하고, 2010년까지 철폐한다. 캔 후르츠 믹스 및 파인애플 캔은 현행 30%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 3.5. 설탕

추가 수입물량을 공여하고, 매년 10%씩 확대하여 15년 후인 2020년에는 관세 및 의무수입물량 모두 폐지한다.

### 3.6. 와인, 맥주, 알콜 음료

(1) 와인은 현행 54%의 관세를 즉시 40%로 인하하고, 10년 후인 2015년까지 철폐한다.

(2) 맥주 및 알콜 음료는 현행 60%의 관세를 즉시 30%로 인하하고, 2010년까지 철폐한다.

### 3.7. 기타 가공식품

(1) 초콜릿 과자는 현행 10%의 관세를 즉시 폐지하고, 설탕과자는 현행 30%의 관세를 2010년까지 철폐한다.

(2) 베이커리 식품은 현행 25~30%의 관세를 2010년까지 철폐하고, 비스킷 및 일부 시리얼은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 3.8. 기타

- (1) 피혁은 10%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 (2) 양모는 현행 1%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면화는 제로 관세를 유지한다.

## 4. 민감 품목과 양국간 특별 세이프가드

양국이 속한 케언즈 그룹은 WTO 농업협상에서는 선진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폐지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TAFTA에서는 양국 모두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를 설정하고 있다.

협정문 제5장에서 세이프가드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세 철폐에 이르는 경과기간 중에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처음엔 2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년으로 연장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은 그것과는 별도로 특별세이프가드 조항을 마련해 놓았다. 이에 따라 태국은 2015년 내지는 2020년까지를 경과기간으로 하는 식육, 유제품, 원예작물의 41개 관세품목에 대해서, 그리고 호주는 참다랑어 캔, 가공한 파인애플, 파인애플 과즙 4개 관세품목에 대해 2008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고, 특별세이프가드의 대상으로 등록했다.

## 5. 태국에도 농산물 민감품목

태국의 농산물 양허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관세 폐지에 5년을 설정한 것, 10년을 설정한 것, 15년을 설정한 것, 최장은 20년을 설정한 것이 있다.

개별 품목별로 경과기간을 둔 사정은 분명치 않다.

어쨌든 WTO 농업협상에서는 자유화를 표방하는 케언즈 그룹에 속하고, 작년 9월 칸쿤 각료회의 이후 G20이라는 개도국 그룹에도 참여해 선진국의 농업보호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태국으로서도 농산물은 쉽게 자유화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 6. 태국 내의 태국·호주 FTA 반대운동

이번 태국과 호주의 FTA 체결시, 태국은 농산물 자유화에 대해 호주에 비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간 협상에 합의한 후 농업, 특히 축산과 낙농분야에서 태국 국내에서 커다란 논쟁을 일어났다. 태국에서는 총리가 FTA를 체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호주와의 FTA 협상 과정에서 총리가 의회와 국민에 대해 협상 내용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공개 문제가 있었던 데다, 협정 내용이 밝혀짐에 따라 소규모 가족경영을 하는 태국 농업이 관세라는 국경조치 없이 대규모 근대적 경영을 하는 호주 농업과 경쟁하는데 대해 농민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 커다란 요인이었다. 태국에서는 농업이 기간산업이기는 하지만, 축산과 낙농과 같이 민감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유지에 강한 우려가 확산되어 협상과정의 불투명함이 강력히 비난받았을 뿐 아니라 FTA 체결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전세계에서 농산물 수출국으로서의 지위가 확고한 태국에서도 농업분야에 민감한 부분을 갖고 있어, 단순히 물품무역으로 취급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참고> 태국·호주의 관세 등 양허내용

표 1 태국의 양허내용과 중요품목의 취급

	현행관세율	2005년1월1일	향후 관세율	시점
전관세품목		품목수의 53% 는 즉시철폐	나머지 품목은 2025년까지 철폐	2025년
공업제품				
자동차	80%		0	2010년
자동차부품·부속부품	42%	20%	0	2010년
기계·기계설비	~30%		0	2010년
전자동세탁기	30%	0		2010년
냉동·냉장고	30%	0		2010년
농산물				
양고기	32%		0	2020년
소고기	51%	40%	0	2020년
돼지고기	33%		0	2020년
육아용 유제품	5%	0		
유당	~20%	0		
기타 유제품	10%	0		
유지 등	최대 14%		0	2010년
버터,치즈,분유,농축유	각각최대14%, 14%,7%,7%		0	2020년
소맥	12~20%	0		
대맥,라이맥,연맥	~25%	0		
과실·야채(신선)	33~42%		0	2010년
과즙, 캔과실	30%	24%	0	2010년
후르츠믹스,파인애플(캔)	30%	0		
초콜릿 과자	10%	0		
설탕과자	30%		0	2010년
빵류	25~30%		0	2010년
비스킷		0		
일부시리얼식품		0		
와인	54%	40%	0	2015년



TRQ품목 추가 탈지분유		2,200t추가물량	5년간 17%씩 확대, 최종적으로 관세·수입의무 폐지	2025년
생유·크림 쌀 설탕		120t추가물량	상동 관세·수입의무 폐지	2025년 2020년
		1,400t	연 10%씩 확대, 최종적으로 관세·수입의무 폐지	2020년

주 : 대맥, 라이맥, 연맥의 관세율은 증가세로 환산한 값

표 2 호주의 양허내용과 중요품목

	현행관세율	2005년1월1일	향후 관세율	시점
전관세품목				
공업제품				
의류·섬유제품240품목	25%		0	2015년
자동차부품146품목	10~15%			
그 중 48품목		0		
98품목		5%	0	2010년
다수품목	5%	0		
농산물				
캔 참다랑어	5%	2.5%	0	2007년
파인애플 캔	5%	0		2007년

주 : (1) 관세폐지 이행기간은 의류·섬유제품이 최장기로서 10년임.  
(2) 파인애플 캔의 이행기간 중에는 특별세이프가드 발동 가능함.

자료 : <http://www.zenchu-ja.org/wto.htm>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